의안 번호	41

제155회 창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7차 문화환경도시위원회(2026.9.28.)

창원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창 원 시 의 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창원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6. 9. 28.(월)
문화환경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6. 8. 24.

나. 발 의 자: 이우완 의원 등 13명

다. 회부일자: 2026. 8. 27.

라. 상정 및 의결일자: 제155회 창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7차 문화환경도시위원회(2026. 9. 28.) 상정, 질의·답변, 토론, 의결
(의안번호 제41호)

2. 제안설명 요지(제안 설명자: 이우완 의원)

○ 기후변화로 불규칙적이고 대형화되는 산불을 방지하기 위해 이에 대한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창원시의 산림과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대해 정함(안 제3조)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라.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마.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산림재난방지법」 제2조, 제3조 및 제16조

2)「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4호너목

나. 조례안예고(2026. 8. 24.~8. 31.) 결과: 의견 없음

다. 비용추계서: 조례안 비용추계서 참고

5. 전문위원 검토요지 (수석전문위원 서효인)

가. 개정목적

○ **본 조례안은** 기후변화 등으로 산불의 발생 양상이 불규칙하고 대형화됨에 따라,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창원시의 산림과 시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 내용

○ **안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산림재난방지법」 제2조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해당 상위법 조항은 산불뿐만 아니라 산사태 등 산림재난 전반을 포괄하는 정의를 인용하고 있어, 산불방지 활동에 한정된 조례의 적용 범위와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향후 조문 정비 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안 제3조는

시장은 산불방지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산림재난 예방·대비·대응 책무와 연계하여,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한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4조는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조례 간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5조는

시장은 산불방지를 위하여 산림정화 및 산불방지 홍보, 산불진화 참여 등의 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관련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과 단체의 자발적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다만,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실제 사업 추진 시 구체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본 조례안에 따른 지원에 2027년 4,495만 8천 원 등 5년간 총 2억 4,841만 6천 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으며, 전액 일반회계 시비로 조달할 계획임.

<비용 추계>

❍ 창원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 예산('27년) (단위 : 천원)

구 분	안전교육	물품지원	부상치료
합 계	44,958		
예산액	19,120	20,838	5,000

❍ 연간 필요 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산불방지 활동 지원	44,958	47,205	49,565	52,043	54,645

* 물가상승분 반영

❍ **재원조달방안**: 시비(일반회계)

❍ 안 제6조는

시장은 산불방지 활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민, 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산불방지 활동의 원활하고 유기적인 추진을 위한 협력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됨.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산불방지 책무와 연계하여, 산불방지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 및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시민·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

❍ 산불은 산림 자원의 소실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도 직결되는 중대한 재난으로서, 예방과 초기 대응을 위한

민간의 유기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됨.

○ 또한 「지방자치법」 제13조에서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산림재난방지법」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산림재난 예방·대비·대응 등에 관한 책무를 명시하고 있어 자치조례로서 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 다만, 안 제5조의 지원대상이 개인 및 관련 단체로 폭넓게 규정되어 있고, 비용추계서에는 참여자의 안전교육, 물품지원 및 부상치료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바, 향후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위해 구체적인 지원 대상·범위 및 지급기준 등을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본 조례안은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고 산불 대응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6. 질의·답변 요지: 기재 생략

7. 토론 요지: 기재 생략

8. 심사 결과: **원안 가결**

9. 소수의견 요지: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부대의견, 건의 사항, 촉구사항 등): 없음